

관세청고시 제2023-46호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3-40호, 2023.5.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3년 7월 12일

관세청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칙 <관세청고시 제2023-46호(2023.7.12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번	고시번호(시행일)	품 명	비고
536	2023-46호('23.7.12)	Blower FAN 등 2건	
537	2023-46호('23.7.12)	USB HUMIDIFIER	
538	2023-46호('23.7.12)	Aquaculture Pond Cleaner	
539	2023-46호('23.7.12)	WEATHERSTRIP HOOD 등 2건	
540	2023-46호('23.7.12)	Ozone Therapy Apparatus	

536. Blower FA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46호 (2023.7.12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FAN Assembly; YLF1205A-10D-03(DC12V)	품목분류4과-7301 (2019.2.21.)
2	Blower FAN; MYK271(DC24V)	품목분류4과-7299 (2019.2.21.)

○ 물품설명

- 차량의 지붕(roof)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결합되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용 팬(fans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414.51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414.59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특정 기계(에어컨 실외기)에 구성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‘기타의 팬’으로 보아 제8414.59-9000호로 분류(제2023년 제4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 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37. USB HUMIDIFI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46호 (2023.7.12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USB HUMIDIFIER ; FT-T1/8509809000	품목분류3과-17318 (2020.8.28.)

○ 물품설명

- 소형 선풍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하나로 결합된 USB 충전 방식의 듀얼 선풍기 겸 가습기(무게 209g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09.80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479.89-1090호

○ 변경사유

- 설계의도나 제품 구조상 ‘초음파 가습기’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79.89-1090호로 분류(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38 Aquaculture Pond Clea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46호 (2023.7.12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Aquaculture Pond Cleaner ; BactaClean-Algae Type1	품목분류과-101015 (2004.7.26)

○ 물품설명

- 미생물과 효소, 실리카, 돌로마이트, 부형제 등을 혼합·조제한 물품으로 연못이나 호수 등 수질 관리(오염물질 분해)를 위한 수처리제로 사용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3002.90-4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3824.99-9090호

○ 변경사유

- 미생물 외에 여러 화학품과 천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이므로 ‘따로 분류되는 않은 화학조제품’으로 보아 제3824.99-9090호에 분류(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39. WEATHERSTRIP HOOD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46호 (2023.7.12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WEATHERSTRIP HOOD ; 94550172	품목분류1과-1200 (2016.6.1.)
2	86431-D3000 W/STRIP HOOD ; R.KOREA	품목분류2과-6158 (2015.8.6.)

○ 물품설명

- 자동차 보닛 하단에 결합되어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립 형상의 연질 고무제품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4016.93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4016.10-0000호

○ 변경사유

- 가황한 셀룰러 고무(EPDM Sponge)와 기타 합성고무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있으나 본질적 특성은 ‘셀룰러 고무’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4016.10-0000호로 분류(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40. Ozone Therapy Apparatu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46호 (2023.7.12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Ozone Therapy Apparatus ;① Twin Nasal Cannula ② Oxygen catheter(PVC) ③ Air-way(PVC)	품목분류47281-589 (2003.07.02.)

○ 물품설명

- 산소 결핍상태의 환자 콧구멍에 꽂아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얇은 관 형상의 비강 캐놀러(Nasal Cannula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9019.20-2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9019.20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산소 발생기나 유량계가 없는 얇은 관 형상의 ‘카테터(캐놀러)’이므로 ‘산소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’으로 보아 제9019.20-9000호로 분류(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